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2
제1조	목적2
제2조	정의2
제2장	신고의 접수 등2
제3조	신고 상담2
제4조	신고의 접수2
제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3
제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3
제7조	신고기록3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4
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4
제9조	신고의 보완4
제10조	. 신고의 취소4
제11조	. 신고의 처리4
제12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5
제13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5
제14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5
제15조	.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6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6
부 최	6

지침 제30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2017.9.1. 제정(지침제307호) 2017.12. 7 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 개정(지침제3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 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겸한다. <개정 2017.12.7>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 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 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 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 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 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 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가 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 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과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도받은 금품등을 이도화이서 및
 - 실 제18 제 때 다 급급 8 을 근도본는 8 ~ 8 지급 8 년 년 일 기 제13오 지 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부 칙 <제307호, 2017.9.1.>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7, 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지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フ E	탁()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업					(서명 또는	= 인)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젙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주민등 (외국인	록번호 등록번호)	
신 고 자	소속			연락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부정청탁을 한	(소속)			한탁시		
자 또는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법인·단체등의	명칭				
	경우	소재지				
		대표자	l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일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장소					
내용	내용(금품등 수수	의 경우	·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반환여부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 일시·장소 및	!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시	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병 또는 인)
한국교통연	안전공단 이사정	}	귀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서(제3자 신고용)

TIA		TIAOITI		-Injoin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등록번호 인등록번호)			
신 고 자	직업 (소속)		연락기	.			
	주소						
	성명						
	직업 (소속)		연락치	Ħ			
피신고자	주소						
(신고대상)	법인·단체등의	명칭					
	경우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성명						
	직업 (소속)		연락기	Ħ			
피신고자	주소						
(신고대상)	법인·단체등의	명칭					
	경우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일시						
법 위반행위	장소						
내용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항	성위를 신고힙	니다.	
					년	월	일
					Ŀ	2	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 (자진신고의 경우 부정 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1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접수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C	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	일
	감사실 감사처	(인)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임	일자			
	성명		소속			
신고자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	청회				
유형	() 회의					
하드 오취	[] 강의, 강연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S	의결	[] 기타()		
	기관명		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일괄신 시 분~ 시 분	<u>-</u>	월(연)평균 횟수 : 1회 평균 시간 :			
사례금	총액 <u>천원</u> (※ 1회 평균 대기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u>천원</u>			ㅂ ・식ㅂ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소속			
신고자	직위		· 연락처			
	(직급)					
외부강의등	[] 교육, 홍	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	연	()フ	고		
≅ 0 ∏8	[] 발표, 토	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フ	 타 ()	
	기관명		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 ~ 20 ~ 시 분				
사례금		<u>천원</u> (※ 1회 평균 대가 II·식비(실비) <u>천원</u> 별도			·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	수 : <u>천원</u>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방법 :	반환 금 액 :			※증 빙/	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며	또는 인)
					/10	<u> L L/</u>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	-일자	20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 구분	[] 수사기관 통보 [] 법원 통보 [] 소속기관	통보	[] 징계치	처분 [] 종	[] 기타
		20				
-1-1-11-1		20				
처리내역		20				
		20				
신분공개	000	타 조사기관		담당	당자	000
동의여부			종 료			
종료일	20 .		확			
보존기간		까지)	인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 동의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	#하여 우리 ○○○에서 조사 확인하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 관에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 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 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
타 기관 신고 여부	[] 타 기관 신고([] 소속기관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	나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	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년	월 일
	위 신고지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	[일바요지 60a/m²(재환요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고			접수일지	
접수번호				
	성 명		직 업	
위반혐의자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u>총</u>	ΣĤ	
비고				Omm×297mm(일바요지 60a/m'(재황요푸))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반자 인적사항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어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일시	
	장소	
	내용	
위반행위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き	등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 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 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 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다	내한 ○○○의 조사결과에 다	하여 아라	H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	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역	일자				
조사결과			결과통	동지일				
	성명							
이의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는 서명)		
한국교통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금품등 관리대장

이러	신고	신	==		7104		신고자			제공자		인	관리	LL 71	2171	-171	ш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 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도 일	부서 (관리자)	지	처리 결과	일	고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성명	소속
받는 자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에 대하여 반환을 확인합니다.

반환 연월일 : 20 . . .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성명	소속
인도자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인수일	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일자			
	성명		Ş	생년월일					
청구인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0107									
반환계좌	금융 기관명 : 계 좌 번 호 :								
	금품 (물품)								
반환 금 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	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	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직무관련 내용								
사람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	는 인)		
				210m	าก×207mm(୧/୯୯୮)	60a/m²/TU5	하요프/)		

위반행위 관리대장

		위:	반자				위반내용	처리결과	조치결과	
일련번호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신고일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일)	(조치일)	비고